

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안치영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2014년 「지역문화진흥법」이 제정되어 실시된 이후, 2021년, 2022년 5차례에 걸쳐 개정된바, 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,
-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들의 자발적인 지역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특색 있는 고유의 도 문화를 발전시키며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임.

4. 주요내용

- 지역문화, 문화예술, 문화도시, 문화지구,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-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및 예산지원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~제15조)
-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6조)
-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·군, 지역문화 관련 기관·단체 및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7조)
-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한 기관·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8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충청북도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, 도민의 자발적인 지역문화 활동을 장려하고, 충북 고유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며,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2조에서는 지역문화, 문화예술, 문화도시, 문화지구, 지역문화전문인력 등 법령에서 정의한 주요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,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써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재원 확보 및 시책 추진의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.
 - 안 제4조에서는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이 조례의 우선적 적용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며, 안 제5조에서는 5년 단위의 「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」 수립·시행·평가 의무를 도지사에게

게 부여하고,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 실행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.

- 안 제6조에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항목을 열거하고,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.
-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, 기능, 위원의 자격 및 임기, 회의 운영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음.
- 안 제16조에서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도지사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전문인력 확보와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음.
- 안 제17조에서는 시군 및 문화 관련 기관·단체,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을 두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.
- 안 제18조에서는 지역문화진흥에 공로가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유공자의 사기 진작과 지역문화 기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.

○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지역문화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, 도내 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, 고유문화 콘텐츠의 육성, 문화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,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현장 중심의 문화역량 강화, 시·군 및 민간과의 협력 강화 등 지역문화 진흥에 있어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.

○ 특히 도지사의 책무, 시행계획 수립, 위원회 구성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행정적 책임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으며, 문화

도시 및 문화지구 지정·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 발전 기반 또한 마련될 것으로 판단됨.

-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「지역문화진흥법」을 충청북도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, 자발적 문화생태계 조성, 문화권 보장 등 지역문화정책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.
- 이를 통해 충청북도 고유의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문화정체성을 강화하며, 문화예술을 포함한 관광, 교육, 복지, 경제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충청북도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, 그 제정의 타당성에 이견이 없음.